공익법인 외부감사 A to Z	김덕산 회계사 (한국공익법인협회)	강의자료 보기

외감 확대 배경과 준비 방안

1. 공익법인 외감 확대

1년에 자산 100억에 대한 이자 1억 정도를 쓰는 단체보다 자산은 1천만원밖에 안되지만, 기부금이 20억이상 들어오는 단체가 사업비 규모가 더 큰 공익법인일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세법의 외감 범위에 수입금액 50억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 이상이 추가되었다(수입은 이자수익, 배당수익, 수익사업 관련 매출, 기부금 포함). 개정 법령에 따라 자산은 적지만 **1**년 동안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단체들은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회계처리는 장부작성,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작성 등 여러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외부전문가가 회계기준에 따라서 잘 작성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회계감사이다.

2. 회계감사 준비

일단,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준비해야한다. 어떤 기관이 그 해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고**,** 남았는지를 확정하고**(**경영실적**),** 연말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갚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재무상태**)** 것이 결산이다.

결산을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다.

1) 기간귀속

어떤 수익과 비용이 당장 들어오고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건이 발생했던 해(연도)의 수입과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이 기간 귀속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CMS** 기부금이다**.** 누군가 **CMS**를 통해서 **12**월 **31**일 결제를 했다**.** 그러나 단체 입금일은 다음 해 **5**일이다**.** 이럴 경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기부금이 통장에 들어온 시점에 수입으로 잡는다**.** 그러나 기부금 영수증은 **12**월 **31**일자로 발급하고 수입도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기록해야 한다**.** 아직도 단순하게 현금흐름만 기록하는 단식부기를 하는 곳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

2) 실재성

감사인들이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게 실재성이다.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은 실재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데 실재로 없는 재산이 있다면 이는 가공재산이고 실재성이 없는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3) 완전성

재무제표에 기록돼야 할 내용은 빠짐없이 다 기재되어야 한다. 자산보다 부채 항목에서 완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사는 입장에서는 기업을 가급적 싸게 인수하려고 할 것이고, 파는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를 최대한 적게 설정해 가진 것이 많아 보이게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를 재무제표에 기록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럴 때 기록안 된 부채를 찾아서 기록해야 하다. 이것이 완전성이다. 비영리에서는 자산에서 이런 완전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4) 평가

자산과 부채를 적절한 가치로 계상하는 것이 평가이다. **80**년대에 설립된 재단이 취득한 주식의 원가는 당시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근 주식이 **500**억에 팔렸지만 기관의 장부상에는 계속 취득 원가인 **100**만원으로 되어있다. 반대로 어느 기관에 자산 **1**억원을 빌려줬는데, 기관이 망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주식은 재평가된 금액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받을 수 없는 **1**억은 자산에서 삭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의 문제는 유가증권이나 기부물품을 가진 곳에서 발생한다.

5) 분류의 적절성

분류의 적절성은 동일사건과 거래는 일관되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이 달라지더라도 계좌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일관성 있게 정리되어야 한다.

회계감사에 대한 **Q&A**

1.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외감 대상 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0.07%로 100억 기준으로 700만원 정도인데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든다면 고민이 될 수 있다. 결론만 이야기 하면 **300**만원 더 쓰고 감사를 받는게 좋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불성실한 기관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회계감사를 통해 부정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가?

회계감사로 부정과 오류를 100% 발견할 수는 없으며, 감사위험이 존재한다. 감사인은 장부가 잘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부가 잘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1) 고유위험

회계 담당자 또는 부서의 내부적 오류, 횡령 등 경영자의 도덕성에 따른 문제 등 부정과 오류를 걸러줄 내부통제시스템이 없어 발생하는 위험으로 재정 또는 평판의 손실을 초래한다.

2) 통제위험

담당자가 회계정보를 잘못 작성하더라도 담당 팀장이 수정하거나, 정기적인 결산을 통해 예금이나 기부금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확인하는 통제절차와 관련한 위험으로 부정이나 오류가 회사의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적시에 수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3) 적발위험

회계 감사인이 장부가 잘 작성되었는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회계 감사인에 영향을 받는 위험요소이다. 감사인이 해당 업종을 잘 모르거나 증빙서류 100개를 봐야하는데 30개만 보는 등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다면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은 감사인이 장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감사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적발위험 밖에 없다.

3. 회계감사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감사위험 중 감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적발위험이다. 회계감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하며, 문서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문서를 조작하거나 마음먹고 횡령하려고 하면 감사인이 다 찾아내기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이는 적발위험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감사보수가 결정된다는 것으로 다수의 논문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낮추면 감사위험이 줄어들고 감사인이 시간을 적게 투입할 수 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증빙이 왜 중요하냐고 하는 대표자가 있다. 그런 기관은 기본적으로 고유위험이 크고, 통제도 전혀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감사인이 전수조사를 하고 엄격하게 봐야 한다. 어떤 기관은 증빙도 잘 갖추고 있고 경영자도 도덕적이며 매달 결산하는 절차를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있다. 이런 기관은 감사인이 좀 더 적은 샘플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결국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을 기관에서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감사보수가 결정된다.

중요한 것은 장부부터 잘 작성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회계사들이 비교적 여유로운 6월에 중간 감사를 한번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법인의 취약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기말감사 때 훨씬 더 적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궁금증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주요사항

핵심적인 사항은 사업비용을 활동성격에 따른 분류, 즉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업비(사업수행)과 운영비(일반관리)에 운영비 중 모금활동에 특화된 비용을 모금으로 구분한다. 비용은 다시 지출의 성격에 따라서 분배, 시설, 인력, 기타로 나누어지게 된다.

공시서류 작성 의무사항이 된 주석 기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재무제표에는 본문이 있고 주석이 있다. 본문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가 있으며, 주석은 본문에 있는 각주같은 개념이다. 즉, 뒷장에서 특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주석이다. 주석 기재 사항으로 공익법인의 개황, 회계정책, 차입금, 현물기부, 진행중인 소송, 기본 순자산 등이 있으며, 실무지침서에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할 수 있다.

주석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특수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특수관계인 범위에 넣어서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표자 건물에 무상으로 있는 것, 이런 것은 특수관계인으로 기록해야 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익법인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관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는 특정사업명을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정과목을 공익법인실무자교육(프로젝트) 5천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직관적일 수 있으나,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는지 세부사항을 알 수 없으며 기관마다 계정과목이 달라서 기관 간 비교가 불가하다. 따라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등 지출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적용하면 프로젝트별 집계가 가능하다.

2. 인력비용이 많은 단체보다 분배비용이 많은 단체가 일을 더 잘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비용(지출)을 분배, 인력, 시설,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주로 장학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기관은 분배비용이 많고, 기획사업이 많은 곳은 인력비용이 대부분이며, 시설비용은 공원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즉, 이러한 비용의 많고 적음은 법인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력비용의 규모만으로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인력비용이 많은 단체보다 분배비용이 많은 단체가 더 일을 잘 한다'는 틀린 말이다. 반면 비용의 상위구분으로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에서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단체가 일반관리비용이 많은 단체보다 일을 잘 한다' 는 맞는 말이 될 수 있다.

3. 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해야 하는가?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자산 5억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 이상 이라는 기준에 대부분의 기관들이 포함되고, 이럴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으로 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공시서류를 작성할 수 없다. 아직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단체들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춘 결산서류 작성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외감대상이면 그 필요성이 더 크다.

4.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용의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해 공통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작업시간, 사용, 면적 등)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처한 원가회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에 따라 안분하고, 그 외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안분하면 된다. 인건비의 경우 대부분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단체는 업무를 세분화해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기록하고, 비율이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통해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